

##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9일

## 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3년 2월 13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9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js9695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조례안 내용 | 찬성여부 |    | 의견 | 비고 |
|--------|------|----|----|----|
|        | 찬성   | 반대 |    |    |
|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|

#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

(박상현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 : 2023. 2. .

발 의 자 : 박상현, 이길호, 신경원,  
김귀근, 신금자, 이우천,  
이훈미, 이동한, 이혜승

## 1. 제안이유

-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에 따른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책무 (안 제3조)
- 다.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(안 제5조)
- 라. 안전교육 진흥 지원 (안 제8조)

## 3. 관련법령

-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

##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에 따라 시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,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안전교육”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.
2. “안전교육 전문인력”이란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군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민의 권리와 참여)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, 안전교육 진흥 시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5조(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) 시장은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 제6조에 따라 연도별 군포시 안전교육시행계획(이하 “안전교육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안전교육 진흥 시책의 추진)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 제공
2.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3.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4.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
5.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안전교육 진흥 지원)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 추진 시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